

JPE 편집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전력전자학회(이하 ‘학회’라 함)가 발행하는 Journal of Power Electronics(이하 “JPE”라 한다)의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JPE 편집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는 Editor-in-Chief 1명, Editor 2명 이상, Associate Editor(국내)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② Editor-in-Chief는 전 현직 Editor-in-Chief 약간 명으로 구성된 JPE Advisory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회장은 현직 Editor-in-Chief 임기 종료 최소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③ Editor 및 Associate Editor는 Editor-in-Chief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Editor-in-Chief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⑤ Editor 및 Associate Editor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⑥ Associate Editor의 교체는 JPE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재직위원 50% 범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Editor 중 2인은 편집이사로 보한다.

제3조(업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JPE 발간 및 편집에 관한 사항
- ② JPE 투고 논문의 심사 수행 (JPE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함)
- ③ SCI 등재 추진
- ④ 기타 학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Editor-in-Chief, Editor)

- ① Editor-in-Chief는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된다.
- ② Editor는 Editor-in-Chief를 보좌하고, Editor-in-Chief의 유고시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Editor가 Editor-in-Chief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개최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Editor-in-Chief가 소집한다.
 1. 정기회의
 2. Editor-in-Chief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② 위원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9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19년 1월 1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.